

주·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『도로교통법』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을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16조 규정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)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주·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**수취인불명, 미거주(부재), 이사**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함으로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.9.16.

인천광역시 강화군수



1. 제 목: 주·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(재 발송) 통보
2. 위반내용: 『도로교통법』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
3. 근거법규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, 제17조 규정
4. 공시송달 대상자: **“불임내역 참조”**
5. 공고기간: **2019.9.16.(월) ~ 2019.9.30.(월)** (15일간)
6. 공고장소: 인천광역시 자치구 지방 시·군·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7. 과태료부과 근거법령: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
8.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등: 4만원(단 승합차 및 4톤 이상 화물차 등은 5만원)
※ 단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없이 자진납부 하는 경우 20% 감경됨.
9.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경제교통과(교통지도팀)로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(☎032)930-3639)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,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
10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경제교통과(☎032)930-336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과태료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현황 1부. 끝.